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24호

「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1일

강릉시의회의장

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이유

강릉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시장과 운영자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작은도서관의 기능(안 제5조)
- 라.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9조)
- 마.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(안 제11조 및 제12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번호: 033-640-4116
- 팩스번호: 033-640-4070
- 전자우편(이메일): jhyoon93@korea.kr

붙임 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강릉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,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도서관”이란 「도서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.
2. “작은도서관”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,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“공립 작은도서관”은 강릉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.
 - 나. “사립 작은도서관”은 「민법」, 「상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.
3. “도서관자료”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.
4. “운영자”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·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「작은도서관진흥법」 제3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

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매년 법 제37조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조(운영자의 책무 등) ① 운영자는 도서관자료 대출·반납·정리와 관련된 사항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운영인력 보수·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며, 업무 지침 및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.

1.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2.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3.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
제5조(기능)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제공·열람·대출
2.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
3.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·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4. 지역의 공공도서관,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

5.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

제6조(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등) ①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
제7조(작은도서관의 지원)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 환경 개선
2. 도서관자료 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
3.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
4.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)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강릉시 사무의 위탁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)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

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10조(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 제6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릉시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
2.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「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」 제14조에 따른 강릉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포상)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·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「강릉시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